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8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윤관석・임종성・고용진

홍성국 · 양기대 · 홍정민

고영인 · 김경협 · 김영배

정일영 · 김철민 · 조승래

유정주 · 김윤덕 · 김교흥

허 영·김홍걸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 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제58조의3제1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한다.

제58조의3제1항 전단 중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를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매 알선"을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 등) ① -----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대통령령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 니하다. 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 손해배상책임) ① -----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 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 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

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 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 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게 구상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u>매매 알</u> 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및 제84조제3항제23호에서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백도</u>
<u>또는 매매의 알선</u>
1. ~ 3. (현행과 같음)